

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조례의 적용 범위(안 제3조)
 -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(안 제4조 및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‘관급공사’, ‘수급인’ 및 ‘사업주’의 정의에 대하여,
 -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의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,
- 참고로 구로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향후, 본 조례가 공포·시행될 경우 집행부의 사업부서와 계약부서·발주부서 상호 간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